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34167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341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합5543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영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피항소인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마상미

변론종결 2022. 11. 16.

판결선고 2022. 12.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합5543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5,775,350원 및 이에 대해 2020.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 표 안의 계약보증약관 제1조 제1항 2행의 원고 앞에 있는 “그”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6행의 “2019. 5. 1.자 계약해지 요청”을 “2019. 5. 1.자 계약해지 요청[원고 보조참가인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2019. 9. 17.자 계약해지 요청 전에도 2019. 5. 1.자로 원고(조달청)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다(을 제7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5행부터 11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의 계약보증약관은 ‘보증계약자인 D이 이 사건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그와 같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계약자인 D이 보증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또한 위 계약보증약관은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청구 전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의 가.항에서는 D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3) 이러한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사고는 D이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의 가.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13쪽 7, 8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D의 관급자재 횡령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가. 9)항이 규정한 해지사유, 즉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9)항의 해지사유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법부정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어야 위 해지사유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횡령행위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D의 관급자재 횡령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해지사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위 횡령행위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가. 9)항이 규정한 해지사유, 즉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이후의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D의 관급자재 횡령행위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가. 9)항 소정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1)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12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D은 위와 같은 등록말소 내지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 당시 이미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해지사유는 이 사건 해지통보의 해지사유로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원고는 2021. 7. 26. 제출한 소장에서도 이 부분을 해지사유로 내세우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5쪽 13행의 “회신한 바 있다” 다음에 “[선금보증연장서 등의 제출의무불이행은 이 사건 해지통보 당시 해지사유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이 사건 해지통보의 해지사유에 ‘D이 원고 측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원고 측의 이행촉구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아울러 원고는 2021. 7. 26. 제출한 소장에서도 이 부분을 해지사유로 내세우지 않았다). 더욱이 D은 2012년경부터 수차례 선금보증연장서를 발급받아 원고 측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이 선금보증연장서 등의 제출을 요청한 2018년경은 원고 측 사정으로 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1차수 계약 준공예정일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으며, 공사가 언제 시작될 지 알 수도 없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D이 원고 측의 선금반환촉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금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선금보증연장서 제출이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만큼 D이 원고 측의 선금반환촉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항석, 판사 공도일, 판사 오영상

1) 원고 보조참가인 2022. 10. 13.자 준비서면